

石油事業法 改正에 바란다

『施設高度化와 기술개발 위해 투자지원대책을 마련해야』

吳政均

(極東石油業務部(法務室))

1. 머리말

현 제 우리 나라에서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각종 經濟法令중에서 石油事業法은 그 위치와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現石油事業法은 그 체제와 운용이 現實附合性이 어느 정도 뛰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급변하는 세계 에너지 정세와 国内外 經濟与件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는 經濟法的인 석유사업법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石油」라는 자원의 有限性과 경제적 高價值로 인해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黃金의 에너지源을 法條文 몇개를 가지고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경제에 파급되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83호로서 日本의 石油業法을 援用하여 石油事業法으로 제정된 이래 75년도, 77년도 및 82년도에 3차례에 걸친改正을 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현행 石油事業法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세계석유정세추이에 따른 제도마련과 구체적 타당성 있는 법운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

石油事業法 제정 이후 15년의 기간동안 1, 2

次 石油波動의 여파로 石油市場을 포함한 세계경제가 큰 變化를 겪어 왔으므로 국내외 經濟狀況의 변동에 따른 석유사업법의 經濟法의 再檢討 및 개정의 타당성이 내재되어 있고 또한 모든 경제운용방식이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변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도 경제법의 하나인 石油事業法을 개정하여 종래의 統制的 經濟法의 성격에서 벗어나 민간업계의 자율적 事業活動을 지도 육성하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의 석유사업법 개정추진과 관련하여, 건의하고자 하는 것을 법체계적인 面과 內容面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약술하고자 한다.

2. 法體係的인 面

현행 석유사업법 체제는 조문을 나열하는 形態로 되어 있어 法을 적용하거나 解釋 또는 規制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를 여타 법령처럼 各條文을 특성별로 구분 체계화하여 各章으로 분류할 必要性이 있다는 점과 이와 더불어 석유사업법과는 별도로 석유수급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石油備蓄法이라든지 石油파이프라인事業法, 石油需給適正化法 등을 마련하여 석유사업법의 附帶法令으로서 전문화된

제도가 있어야 하겠다는 點이다. 이런 法令의 設定目標는 중장기 石油政策樹立과 관련하여 原油導入단계로 부터 정제, 제품공급 등의 국내 수급조절에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에 나가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화일 것이다.

3. 内容面

현행 석유사업법상의 석유수급계획은 同法 第3條에 의거 動力資源部長官이 매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계획수립후에 이에 대한 시행검토 여부와 그結果에 대한「리뷰」를 행할 수 있는 제도는 미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고로 현행 석유사업법상에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든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별도法令(석유수급 적정화법) 상에 이를 포함 설치하여도 좋을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수급조절에 지대한「포션」을 차지할 석유 파이프라인에 대한 諸般与件造成을 위해 石油파이프라인事業法을 개정, 파이프라인 건설에 소요되는 費用 지원책을 제도화하거나 현행 석유사업법상의 石油事業基金을 일부 할애하여 전설자금에 충당하도록 法改正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행 석유사업법 제17조의 4(기금의 용도)상에 제1호의 「석유의 비축 및 저장시설」을 「석유의 비축·저장시설 및 석유파이프라인 시설」로 변경하여 파이프라인 건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法的根據를 마련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석유사업지원육성이라는 石油政策과 시기적으로 부합되는 石油事業法改正이 될 것이다.

또한 石油政策의 한 목표인 정유산업의 構造改編과 관련하여 현재 세계적인 추세로도 되어 있는 重質油의 輕質化를 위한 경제시설의 고도화와 이에 따른 기술개발 및 蓄積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重質原油分解施設은 건설에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지만, 원유도입비용의 節減과 원유도입선 다변화라는 효과 외에 저유황제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보존대책에도 한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国家政策의 次元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시에 投資支援을 위한 財源造成의 일환으로 石油事業基金의 용도(법 제17조의 4) 상에 「석유정책시설 고도화 사

업」의 명목을 추가신설하거나 별도의 재원조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현 석유사업법상의 油氈制度하에서는 중질유 분해시설 건설후의 수익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언젠가는 시행될 油氈自律化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결점보완대책을 改正석유사업법상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석유정책업의 허가 등과 관련, 현재 申告對像인 석유정책업의 경우 석유사업법상의 의무사항이행 위반시 이에 대한 규제근거가 미흡한 점이 있고, 罰則條項에서도 罰金額의 量이나 형량이 현經濟與件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법개정시 이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무릇 法이란 용어 자체가 三水변에 갈去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가?

물이 흘러가듯 세월이 변화됨에 따라 생태적으로 法도 변하게 되어 있음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太古이래로 인간에 의하여 생성되고 다시 그 인간들을 지배하여 온 이 法이란 규범이 이미 우리의 生活의 일부가 되어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종류의 法중에서 石油事業法도 우리의 일상생활 나아가서는 国民經濟에 끼치는 힘이 실로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改編시에는 아무리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정부당국에서 法改正을 추진하고 있는 이때 반복되는 말이지만 그 시대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몇 안되는 精油產業體와 有關團體 및 관련업계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정요구사항을 총괄적으로 수렴하여 多方面에 걸쳐 모두의 애로점을 해갈해 줄 수 있는 法改正이 이루어진다면 더 말할나위없는 實情法(?)의in 實定法이 되지 않겠는가?

평소에도 국가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정부당국의 노고에 이 기회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法制定 이후 오래간만에 추진되는 全面的인 法改正이므로 国家基幹產業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정유업계를 더욱 훌륭히 育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